

제주지방법원 2022. 5. 16 선고 2021가단516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제주특별자치도

소송대리인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1.

판 결 선 고 2022. 5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14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.

12. 1. 접수 제8268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1990. 2. 20. 같은 해 2. 8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는 2008. 11. 19. 피고에게 제주시D공사 부지로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작성하고, 같은 해 12. 1.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채납 받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마친 후 차량 회차지 및 일반 차량의 일시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음에도 피고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나 개설하기로 한 도로의 형태나 종류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동호